#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0581

발의연월일: 2025. 5. 22.

발 의 자: 박수현·서삼석·이정문

박용갑 • 이개호 • 주철현

김종민 • 이건태 • 조계원

조인철 · 양부남 의원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지역신문'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등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을 말하며, 문화체육관광부에 지역신문발전위원회와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역신문은 지역문화의 보존 및 계승, 지역 소멸 위기 대응 등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명확한 법적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집행조직인 사무국설치에 관한 근거도 부재한 실정임. 한 때 250억 원이었던 지역신문발전기금은 현재 약 80억 원으로 1/5 수준으로 줄어들었으며 이로 인한기금의 안정성과 독립성이 크게 우려되는 상태임.

이에 현행법에 지역신문의 공익적 역할을 명시하고, 지역신문발전위 원회 사무국 설치 근거를 규정하며, 정부가 지역신문발전기금에 매년 출연하도록 하고, 기금의 용도에 사무국의 설치·운영 지원을 포함하 도록 함으로써, 지역신문의 공익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지속가 능한 지역언론 생태계 조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등).

###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이바지함을"을 "이바지하고, 지역문화의 보존과 계승, 지역소멸 위기 대응 등 지역사회에 대한 공익적 역할을 강화함을"로 한다. 제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신문의 지역문화 보존 및 계승, 지역소멸 위기 대응 등 공익적 역할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1조의2(사무국의 설치) ① 위원회의 업무 보좌와 실무 지원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사무국을 설치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3조제1항 중 "발전과 지원을"을 "발전·지원과 공익적 기능 활성화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정부는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회계연도마다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 제15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

다.

5.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사무국의 설치 및 운영 지원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신문의	제1조(목적)
건전한 발전기반을 조성하여	
여론의 다원화, 민주주의의 실	
현 및 지역사회의 균형 발전에	
<u>이바지함을</u> 목적으로 한다.	이바지하고, 지역문화의 보존과
	계승, 지역소멸 위기 대응 등
	지역사회에 대한 공익적 역할
	<u>을 강화함을</u>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② (생 략)	책무) ①·②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
	역신문의 지역문화 보존 및 계
	승, 지역소멸 위기 대응 등 공
	<u>익적 역할 증진을 위하여 필요</u>
	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u>수 있다.</u>
<u>&lt;신 설&gt;</u>	제11조의2(사무국의 설치) ① 위
	원회의 업무 보좌와 실무 지원
	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사무국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국의 조
	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제지역신문의 <u>발전과 지원을</u> 위하여 지역신문발전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생 략)<신 설>

제1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 4. (생 략) <u><신 설></u>

5. (생략)

13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3) (1
<u>발전</u> ·지원과	공익
적 기능 활성화를	

- ② (현행과 같음)
- ③ 정부는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회계연도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제15조(기금의 용도) -----

 ~ 4. (현행과 같음)
5.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사무 국의 설치 및 운영 지원
6. (현행 제5호와 같음)